

군포시 고시 제2026-85호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39(1994.9.15.)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6-16(2026.2.20.)호로 결정(변경)된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7. 24.

군 포 시 장

□ 군포 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가.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편 주거지 부문'

○ 제1장 공동주택용지

기정	변경	비고
제 3 조 [지침의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적용한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되는 보행로, 차도 등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부분까지 일관된 연속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작성,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지침의 적용범위] 1. ~ 2. (좌 동) 3. <u>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사업 특성 및 여건상 본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지에 대한 별도 지침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u>	제3호 신설

나.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상업지 부문'

○ 제2장 주상복합용지 지침

기정	변경	비고
제 2 조 [지침의 적용] 1.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나 조례에 따른다. 2.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공동주택부문의 지침은 이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공동주택용지지침에 따른다. 4.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시행지침의 규정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행지침에 의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 1. ~ 4. (좌 동) 5. <u>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사업 특성 및 여건상 본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지에 대한 별도 지침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u>	제5호 신설

9. 관계도면 : 개제생략(변경없음)